

유치원·유아원

園費 편법 引上

재료비 등 합쳐 20%나

「관례」명목 6개월분 先納 요구도

시교위 5% 이상 引上분 환불 지시

이런 주부터 개원하는 대부분의 서울 시내 유치원과 유아원을 지난해부터 평균 20% 이상이나 오른 원비(園費)를 요구하고 있어 학부모를 곤란하게 만들고 있다. 또한 대부분의 유치원과 유아원은 「관례」라고 명목으로 3개월이나 6개월치의 보육료를 미리 받기로 해 호감을 끌고 있다.

유치원과 유아원의 이같은 행태는 전라북도교육청과 전라남도교육청 등 두 지역의 교육청이 의견을 수렴, 자체적으로 결정하고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. 유아원에서는 이를 반영하지 않고 있다.

전북도의 유치원이나 유아원은 시교위와 각 교육청이 정한 원비(園費)를 정액으로 제정하고 있다. 교육청이 정한 원비(園費)를 초과하여 추가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. 그러나 일부 교육청에서는 원비(園費)를 초과하여 받고 있다.

전라북도교육청의 A유치원은 지난해 원비(園費)를 5% 이상

만 보육료를 월 1만원으로 대폭 인상했다.

전라북도교육청의 B유치원은 지난해 원비(園費)를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했다. 이는 전라북도교육청이 정한 원비(園費)를 초과하고 있다.

특히 대부분의 유치원과 유아원에서는 한 달 단위로 시작하는 원비를 월 1만원씩 해 달라고 정하고 있다. 전라북도교육청은 이같은 행태를 금지하고 있다. 그러나 일부 교육청은 이를 무시하고 있다.

개월분을 미리 받고 있는 실정이다.

이밖에도 대부분의 유치원과 유아원은 매달 5천 원~1만원의 수납비나 야외활동비, 원생들의 학용품비 등을 1달~2달 단위로 한 조급, 시중보다 훨씬 비싼 사립을 갖지 않음의 장부

를 요구하고 있어 유치원이나 유아원의 월보육비가 총액으로 10만원에 달하는 실정이다. 시교위나 교육청에 대해 「유치원」이나 「유아원」의 규약을 정한 조례를 10% 이내로 인상